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4-5.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¹⁸⁴⁾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¹⁸⁵⁾

- (요건)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

구 분	내 용		
고용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고용비율	·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다음의 기준 이상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의 5% + 20명		
시 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것		
임 금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지원 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감면 한도: 1억원 + (장애인¹⁸⁶⁾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18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

18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1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 농어촌특별세 과세
- 다음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①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②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③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7

장애인 표준사업장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www.kead.or.kr>(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 1588-1519